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서울수 사무관 이학진	042-481-5842
	2015년 11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23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한국소비자원’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 지식재산 보호관련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 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1월 24일(화) 11시30분 특허청 중회의실(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활동에 있어 지재권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건전한 지식재산 보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 지식재산 보호와 소비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의 상호연계 ▲ ‘소비자 교육 시범학교 운영’시 지식재산 보호내용 포함 ▲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의 산업재산 분쟁조정 업무와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에 있어서도 상호제도 안내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해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존중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해 지식재산이 존중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특허청-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서

참고1 특허청-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서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서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존중과 보호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협력분야) 특허청과 소비자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특허청과 소비자원은 양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 사업에 지식재산 보호와 소비자보호 관련 프로그램을 각자 신설하고, 관련 콘텐츠 제공과 전문 강사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특허청과 소비자원은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학교 소비자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존중 등 소비자의식 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3. 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조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 처리에 있어 특허청과 협력하고, 특허청은 위 상담 및 피해구제 처리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4. 특허청과 소비자원은 매년 지식재산 보호·소비자의식 개선에 관한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고, 각 기관이 개최하는 세미나·전시회 등 유관 행사에도 적극 협력한다.
5. 특허청과 소비자원은 소관업무 수행 중 소비자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특허청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의 소비자 관련 분쟁을 각자 알게 된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제도의 안내 및 활용을 권장하여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 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나.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 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6.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협력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제2조(협약의 이행)

- ① 특허청과 소비자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협력 사업을 수행하며, 각자의 비용으로의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 사이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3조(비밀보호)

특허청과 소비자원은 본 협약상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효력 및 해지)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합의 하에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5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합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제6조(기타)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1월 24일



특허청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특허청장 최 동 규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한국소비자원장 한 건 표

참고2 「특허청-한국소비자원」 협력 현황

□ 그간 협력현황

- ① (소비자교육 콘텐츠) 생애주기별 소비자 교육 콘텐츠* 내 청소년기 소비자피해 중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관련 콘텐츠 포함('15.10)

* 소비자 생애주기를 5단계 구분, 생애주기별 주요 소비자문제와 대응방법을 카툰형태로 제작·보급(한국소비자원)

- ② (소비자 보호교육) 소비자원에서 추진하는 소비자보호 실무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위한 지식재산 보호 교육 지원(3회, 180여명)



지식재산보호 실무 교육 연수

정품·위조상품 비교 전시

□ 향후 협력 계획

- ① (피해 구제센터)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조상품 피해 상담, 구제에 협력

* 위조상품 상담(소비자원) : ('11) 741건→('12)1,064건→('13)1,432건→('14)1,342건

- ② (시범학교 연계) 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 청소년 교육 실시

- ③ (교육콘텐츠 배포) 소비자 교육 참가자 대상 위조상품 구매 예방 콘텐츠 보급·활용(만화 도서 등)